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12.(목) 06:00 < 1.12.(목) 석간 >	배포 일시	2023. 1. 11.(수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덕열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정한솔 (044-203-5216)

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

- 경감금액 월 한도 50% 상향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**사회적 배려대상자**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**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**를 현재보다 **50% 확대**한다고 밝혔다.

※ 지난 1.4(수)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설 민생안정대책」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

○ 이를 위해 「**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**」을 개정하여 1.12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이번 개정으로 **장애인**(1~3급), **국가·독립유공자**, **기초생활**(생계/의료급여) 수급자의 **동절기**(12~3월) 월 할인한도가 현재 **24,000원**에서 **36,000원**으로 확대되고(4~11월은 현재 6,600원에서 9.900원으로 확대),

○ **차상위계층**, **기초생활**(주거) 수급자의 **동절기**(12~3월) 월 할인한도가 현재 **12,000원**에서 **18,000원**으로 확대(4~11월은 현재 3.300원에서 4,950원으로 확대),

○ **다자녀가구**, **교육급여 수급자**, **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**의 **동절기**(12~3월) 월 할인한도가 현재 **6,000원**에서 **9,000원**으로 확대된다(4~11월은 현재 1,650에서 2,470원으로 확대).

<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>

대 상	적용시기	월 할인한도 변경	증가액
장애인(1~3급), 국가·독립유공자, 기초생활(생계/의료급여) 수급자	동절기(12~3월)	24,000원 → **36,000원**	**+12,000원**
	그 외(4~11월)	6,600원 → **9,900원**	**+3,300원**
차상위계층, 기초생활(주거) 수급자	동절기(12~3월)	12,000원 → **18,000원**	**+6,000원**
	그 외(4~11월)	3,300원 → **4,950원**	**+1,650원**
다자녀 가구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	동절기(12~3월)	6,000원 → **9,000원**	**+3,000원**
	그 외(4~11월)	1,650원 → **2,470원**	**+820원**

□ 변경된 할인액은 **2023년 1월 1일**부터 **사용**한 **도시가스**에 대해 적용하며, **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**에 대해 이미 **요금**이 **청구**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**추가된 할인액**을 **일할 적용***하여 **환급****할 예정이다.

* 예시) 기초생활(생계/의료급여)수급자가 1.1~1.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,870원(12,000×10/31)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

**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,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

○ **전출** 등으로 이용하는 **도시가스회사**가 **변경**되는 경우 **요금**을 **납부**한 **지역 도시가스회사**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○ **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**을 이미 받고 있는 **사용자**는 **자동**으로 **추가 혜택**을 받고, **경감혜택**을 **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**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**주민센터**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**도시가스회사**에서 **신규 신청**을 **안내**받을 수 있다.

※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**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**(www.cityga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